# 안 전 기 준

# 가구

# 부속서 5

# (Furnitur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테이블, 의자, 수납가구, 침대, 씽크대, 소파, 기타 가구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각 품목별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별도 품목으로 관리되거나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실험실용 기자재, 소품형 가구(예: 연필꽂이, 책꽂이, 장식함, 독서대, 액자, 벽 옷걸이, 거울, 우산꽂이, 휴지통 등), 소형 가구(예: 벽걸이형 소형선반, 행거, 비키니 옷장, 와인/와인잔 수납랙, 발판 등) 및 옥외용 가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 품목별 적용범위 >

품목	적용범위	비고
책상 및 테이블	일반 가정,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책상, 테이블, 식탁, 교 자상 등에 적용한다.	
의자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회전/비회전/접이식 의자, 스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납가구	일반 가정, 학교,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 커, 선반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침대	침대란 수면에 사용하는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를 지지하는 구조체로 조합된 것을 말하며, 주택용 보통 침대, 소파 침대, 분할 침대, 2단 침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씽크대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 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소파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에 대하 여 적용한다.	
기타 가구류	일반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장대, 청소용구함, 검색대, 강연대, 사회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규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 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1998 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06 표준가공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I ISO 16000-3 실내 공기-제3부: 폼알데하이드와 다른 카르보닐 화합물 측정-액티브 채취방법

KS I ISO 16000-6 실내 공기-제6부: 흡착제 TENAXTA상에서의 활성 시료 채취, 열탈착 및 MSD/FID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챔버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 (단, 씽크대에만 적용한다) 안전기준 부속서3 가죽 제품

-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1 "구조부재"는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가구 몸체와 외부하중을 지지하는 문짝, 상판, 측판, 뒤판, 선반, 다리, 서랍재 등의 부재를 말하며, 마감재와 쿠션재는 제외한다.
- 3.2 "표면가공"은 도장, 무늬목, PVC 시트, 피니싱 포일, 저압 멜라민 화장판, 고압 멜라민 화장판 등 구조부재의 표면을 장식하거나 마감하는 가공 형태를 말한다.
- 3.3 "마감재"는 의자, 소파 등의 구조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둘러싸는 외피 형태의 가죽, 천 등의 재료를 막하다
- 3.4 "쿠션재"는 의자, 소파 등에 내장하여 하중을 분산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강철 용수철, 우레탄 폼, 라텍스 등의 재료를 말한다.
- 3.5 "수납가구"는 상판, 바닥판, 선반판, 문짝, 플랩, 주름문, 서랍과 같은 수납용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 3.6 "붙박이식 가구"는 벽체 등 구조물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는 가구로 제조전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요구기준에 따라 붙박이 형태로 설치할 명백한 의도로 제작되는 제품을 말하며, 제품 또는 부품 단위로 포장·유통·판매 후 구조물에 고정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3.7 "서랍장"은 여러 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

#### 4. 안전요구사항

#### 4.1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4.1.1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은 <표 1.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또는 <표 2.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overline{\mathtt{H}}$	1.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	>
---	-------------------------	----	------	------	----------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L)	평균값이 1.5 이하일 것	데시케이터법

#### 〈 표 2. 목재재질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비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mg/m²⋅h)	0.12 이하일 것	
톨루엔 방출량 (mg/m²·h)	0.080 이하일 것	소형챔버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 TVOC (mg/m²·h)	4 이하일 것	

4.1.2 소파 제품의 가죽소재는 <표 3. 가죽소재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 3. 가죽소재 유해물질 안전요구사항 〉

시험항목		허용기준치	적용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mg/kg)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PCP)(mg/kg)(¹)(²)		5.0 이하	
6가 크로뮴(mg/kg)(²)		3.0 이하	•
다이메틸푸마레이트(mg/kg)(²)		0.1 이하	5.1.2
아릴아민(mg/kg)( <sup>3</sup> )		30 이하	
유기주석 화합물 (mg/kg)( <sup>4</sup> )	TBT(tributyltin)	1.0 이하	

- 주 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
  - 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 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
  - 4.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 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

## 5. 시험방법

#### 5.1 유해물질

- 5.1.1 제품의 표면가공된 목재재질(보통 합판, 특수가공치장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M 1998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후 7일 (168 시간 ± 2 시간)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 5.1.2 소파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른 시험방법은 안전기준 부속서3(가죽제품)의 5.2에 따른다.

#### 6. 품목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6.1 책상 및 테이블

#### 6.1.1 표시사항

6.1.1.1 품명 책상, 테이블, 식탁 등으로 표시한다.

- 6.1.1.2 외형치수 길이 및 나비는 제품의 최대외형면으로 하고, 높이는 바닥에 닿는 면에서 상판의 윗 면까지의 높이를 mm단위로 차례로 기재한다.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mm 로 한다. 또한, 상판의 길이, 나비 또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최대 및 최소치를 mm 단위로 외형치수를 나타내는 치수의 다음에 괄호로 부기한다. 다만, 길이방향 및 나비방향의 치수는 상판의 테까지 포함한 치수로 한다.
- 6.1.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강판을 사용한 주요부분(다리, 몸체, 서랍의 앞판, 옆판 및 밑판)은 강판두께를 mm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 **6.1.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의 종류는 **<붙임 표 2>**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1.1.5 취급상 주의 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② 옮길 때는 끌지 말고 들며 수평을 유지할 것
  - ③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 ④ 열쇠잠금 장치 및 서랍의 사용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 ⑤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여 수평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 ⑥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⑦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6.1.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형식 1〉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 형 식 1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품 명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3. 구조부재
- 4. 표면가공
- 5. 제조연월
- 6. 제조자명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 주의사항

#### 6.2 의자

#### 6.2.1 표시사항

- 6.2.1.1 품명 의자라 표시한다.
- 6.2.1.2 외형치수 길이, 나비, 높이 및 좌면의 높이를 mm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 2 mm 로 한다. 또한, 등판의 윗면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좌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또는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끌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수치의 다음에 괄호로 부기한다.

- <비 고> ① 길이 및 나비방향 : 다리부분을 제외한 최대 외형면
  - ② 높이방향 : 바닥에 접히는 면 및 다리부분을 포함한 최대높이
- 6.2.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또한 강재의 경우는 강관을 사용한 주요부분(프레임)의 강관두께를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 에 따른다.
- **6.2.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붙임 표 2>**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2.1.5 마감재 가죽소재는 가죽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의 7.1 조성표시에 따르며, 섬유소재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에 따른다. 기타재료는 그 재료 명을 알기쉽게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분마다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조성표시를 한다.
- 6.2.1.6 쿠션재 쿠션재는 <붙임 표 3>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 **6.2.1.7 취급상 주의 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②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
  - ③ 취급시 주의 사항
    - <주의> 1. 부서지기 쉽다. 2. 건조시키시오.
  - ④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⑤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6.2.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쉬운 곳에 <형식 2>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 형 식 2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품 명
- 2. 외형치수 (mm)
- · 외형치수 : 길이 × 나비 × 높이
- · 좌면의 높이
- 3. 구조부재
- 4. 표면가공
- 5. 마감재
- 6. 쿠션재
- 7. 제조연월
- 8. 제조자명
-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10.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1. 제조국명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6.3 수납가구

#### 6.3.1 표시사항

- 6.3.1.1 품명 옷장, 이불장, 서랍장, 책장, 사무용 캐비닛, 파일링 캐비넷, 로커, 선반장 등으로 표시한다.
- 6.3.1.2 외형치수 길이, 나비 및 높이는 mm 로 표시하고,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2 mm로 한다. 높이는 받침틀 및 부착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높이를, 나비는 손잡이 등 앞면에 돌출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포함하지 않는다.
- 6.3.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판인 경우 두께를 mm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 **6.3.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붙임 표 2**>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3.1.5 취급상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설치장소는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하여 수명을 유지하도록 바닥을 조정할 것
  - ②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③ 이동시 끌지말고 들어서 이동할 것
  - ④ 문 개폐 시 문틈이나 경첩에 신체 또는 의류 등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6.3.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쉬운 곳에 < 형식 3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 형 식 3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품 명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3. 구조부재
- 4. 표면가공
- 5. 제조연월
- 6. 제조자명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 6.4 침 대

- 6.4.1 표시사항
- 6.4.1.1 품명 침대라 표시한다.
- 6.4.1.2 외형치수 길이 및 나비는 최대외형만으로 하고, 높이는 바닥에 닿는 면에서 머리판까지를 mm 단위로 표시한다.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pm 10$  mm 로 한다(이 치수는 전체 구성품이 완전 조립식의 치수임).
- 6.4.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 6.4.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붙임 표 2>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4.1.5 매트리스 쿠션재 매트리스 쿠션재는 <붙임 표 3>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 **6.4.1.6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② 많이 더러워졌을 경우 엷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것
  - ③ 습기가 많은 곳을 피할 것
  - ④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화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6.4.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 **형식 4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 형 식 4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품 명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3. 구조부재
- 4. 표면가공
- 5. 매트리스의 쿠션재(매트리스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6. 제조연월
- 7. 제조자명
- 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0. 제조국명
- 11. 취급상의 주의사항

#### 6.5 싱크대

#### 6.5.1 표시사항

6.5.1.1 품명 물버림대, 조리대, 가스대, 복합 취사대, 벽장, 후드장, 장식장, 상부수납장, 하부수납장 등으로 표시한다.

<비고> KS F 1523(주방설비의 정합치수) 및 한국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 참조

- 6.5.1.2 외형치수 외형치수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단체표준 SPS-KHFC 0001-0438 (가정용 싱크대)의 치수 규정에 따라 각각 표시한다.
- 6.5.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 **6.5.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붙임 표 2>**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5.1.5 벽장의 최대적재하중 벽장의 적재하중은 체적 1 m³ 당 최소한 187 kg 이상이어야 하며, 벽장 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적재하중을 벽장마다 각각 표시한다. 다만, 최대 적재하중이 동일한 단위제품 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6.5.1.6 설치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

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사항을 표시한다.

- ① 부적절하게 설치한 경우의 위험에 대한 주의
- ② 설치는 전문가가 하도록 할 것
- ③ 벽 또는 천장이 설치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고정장치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의 여 부를 점검할 것

또한, 자체 조립 방식의 제품에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한다.

- ① 공급된 부품 목록
- ② 필요한 공구 목록
- ③ 볼트 및 다른 고정장치/기구에 대한 도해 (diagram)
- 6.5.1.7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② 가열된 냄비, 주전자 등을 직접 놓지 말 것
  - ③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 ④ 문 개폐 시 문틈이나 경첩에 신체 또는 의류가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6.5.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 형식 5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다만, 동일한 재질, 표면처리 등으로 제작된 단위제품이 조합되어 일체형으로 된 제품의 경우 주된 제품 한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 형 식 5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품 명
- 2. 외형치수(mm) : 가로 × 나비 × 높이
- 3. 구조부재
- 4. 표면가공
- 5. 벽장의 최대 적재하중(kg)
- 6. 제조연월
- 7. 제조자명
- 8.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0. 제조국명
- 11. 설치상의 주의사항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6.6 소파

#### 6.6.1 표시사항

- 6.6.1.1 품명 천연가죽소파, 인조가죽소파, 천연/인조가죽 혼용소파, 천소파, 가죽/천 혼용소파 등으로 표시한다.
- 6.6.1.2 외형치수 가구의 본체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의 직방체(손잡이 기타 부속품을 제외)를 상정하여 길이와 나비, 높이를 mm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오차는 허용범위를 ± 10 mm로 한

다.

- 6.6.1.3 마감재 가죽소재는 가죽의 안전기준 부속서 3(가죽제품)의 7.1 조성표시에 따르며, 섬유소재는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에 따른다. 기타재료는 그 재료 명을 알기쉽게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부분마다 해당 사용재료에 대한 조성표시를 한다.
- 6.6.1.4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재인 경우 강판 및 강관을 사용한 주요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mm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 **6.6.1.5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붙임 표 2>**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6.1.6 쿠션재** 쿠션재는 **<붙임 표 3>**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 6.6.1.7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②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③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 ④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큰 충격을 주지말 것
  - ⑤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⑥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6.6.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 **형식 6** >에 따라 표시하며, 표시는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 형 식 6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품명
- 2. 외형치수(mm)
- · 길이 × 나비 × 높이
- · 좌면의 높이
- 3. 마감재
- 4. 구조부재
- 5. 표면가공
- 6. 쿠션재
- 7. 제조연월
- 8. 제조자명
- 9.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10.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11. 제조국명
- 12. 취급상의 주의사항

#### 6.7 기타 가구류

#### 6.7.1 표시사항

- **6.7.1.1 품명** 화장대, 문갑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청소용구함,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목제도서정리서 가 및 정리함, 사무실용 철제 서고 등으로 표시한다.
- 6.7.1.2 외형치수 길이와 나비 및 높이를 mm 단위로 표시한다. 이 경우에 표시치의 허용오차는 ± 10 mm로 한다.
- 6.7.1.3 구조부재 구조부재는 <붙임 표 1>을 참고하여 표시한다. 재료가 강재인 경우 강판 및 강관을 사용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두께를 mm 로 표시한다. 두께 허용오차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8.2에 따른다.
- **6.7.1.4 표면가공** 표면가공은 **<붙임 표 2>**를 참고하여 표시한다. 2종류 이상의 표면가공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각각 가공부분을 알기 쉽게 나타내고, 해당 가공부분마다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다.
- **6.7.1.5 취급상의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한다. 다만,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생략하거나 다른 적당한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직사광선 또는 열을 피할 것
  - ② 마른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 ③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방출될 수 있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니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만 사용할 것
  - ④ "모서리에 부딪쳐 다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가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⑤ 가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벽고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반 드시 벽에 고정하여 사용할 것
  - ⑥ 어린이가 서랍 또는 선반을 밟고 올라서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 6.7.2 표시방법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 형식 7 >에 따라 표시하며, 떼어냈을 때 얼룩 등의 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 형 식 7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1. 종 류
- 2. 외형치수(mm) : 길이 × 나비 × 높이
- 3. 구조부재
- 4. 표면가공
- 5. 제조연월
- 6. 제조자명
-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 9. 제조국명
-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 [붙 임]

# <표 1. 재료의 종류에 따른 표시문자>

재료의 종류	표 시 문 자
· 천연목(천연목의 판을 모자이크 상태로 짜 맞추어 붙인판을 포함한다) · 천연목의 판을 섬유방향에 맞추어 적층 접착하여 만든 판	· 천연목의 종류를 문자로 표시할 것 예 : "오동"
· KS F 3104에 규정된 파티클 보드	· 파티클 보드(PB)
· KS F 3200에 규정된 중밀도 섬유판	· 중밀도 섬유판(MDF)
· KS F 3200에 규정된 경질 섬유판	· 경질 섬유판(HB)
· KS D 3512에 규정된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강 판
· 보통합판	· 합 판
<ul> <li>나무무늬모양 등을 인쇄한 합판</li> <li>나무무늬모양 등을 인쇄한 종이를 붙인 합판</li> <li>나무무늬 등을 인쇄하고 수지로 함침한 종이를 붙인 합판</li> <li>기타 합판</li> <li>보통합판의 표면에 무늬를 갖는 얇은 무늬단판 (무늬목)을 접착한 합판</li> <li>종이 등의 섬유질 재료를 주재료로 하여 폴리 에스텔 또는 멜라민수지로 고화시켜 보통합판 위에 적층한 합판</li> </ul>	· 화장합판
· 탄 소 강	· 강 재
·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 알루미늄
· 천연석 또는 인조석	· 천연석 또는 인조석, 천연석의 종류를 가 리키는 문자를 괄호 안에 표시할 것
· 피 역	· 천연피혁 또는 인조피혁
· 합성수지를 주제로 하는 쉬트	· 합성수지 쉬트
·대 나 무	· 대 나 무
· 등 나 무	· 등 나 무
· 합성수지 등	・합성수지 등
• 유 리	· 유 리
· 도자기 또는 법랑	· 도자기 또는 법랑
· 전각항 왼쪽난에 적힌 재료 이외의 재료	· 그 재료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에 "지정 외"의 문자를 괄호 안에 부기할 것

<표 2. 재료의 표면가공에 따른 표시문자>

표면가공의 종류	표 시 문 자
<ul> <li>· 폴리에스텔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li> <li>· 우레탄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li> <li>·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li> <li>· 아크릴 세룰로오스락카 수지도료를 도장한 것</li> <li>· 가슈씨유·올시올 등을 수지화한 유성도료를 도장한 것</li> <li>· 타크오일을 합침시켜 마무리한 것</li> <li>· 합성 속건 바니쉬, 백락바니쉬 또는 셀락바니 쉬를 도장한 것</li> </ul>	· 도장의 종류를 앞에 붙이고 도장이라 표시할 것 - 예: "폴리에스텔 도장"
・옻을 도장한 것	. 옻 도 장
· 고형납 또는 금속소재를 사용해서 끝손질한 것	· 도금의 금속종류를 앞에 붙이고 도금이라 표시할 것 * 예 : "은도금"
· 수산, 황산 등에 의한 양극피막을 알루미늄의 표면층에 처리한 것	· 알루마이트
· PVC소재의 인쇄지 시트를 접착한 것	. 비닐
· 모양지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후 표면을 도장처리한 코팅지	· 피니싱 포일
· 원목, 큰 각재, 조각재로부터 회전삭, 슬라이싱, 제재 등의 방법으로 생산되는 균일한 두께의 목재판	
· 요소수지 및 멜라민수지 등이 함침 건조된 인 쇄지 시트를 고온열압에 의해 접착시킨 것	· 저압 멜라민 화장판
· 멜라민수지와 페놀수지로 함침된 3개 층의 함 침 시트지를 고압, 고온으로 접착한 것	· 고압 멜라민 화장판
· 전각항 왼쪽난에 적힌 표면가공 이외의 표면 가공	· 표면가공의 종류를 표시한 문자에 "지정 외"의 문자를 표시

<표 3. 쿠션의 종류에 따른 표시문자>

쿠션의 종 류	쿠션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강 제 용 수 철	강 제 용 수 철
스 폰 지 고 무	스 폰 지 고 무
폼 라 바	폼 라 바
우 레 탄 폼	우 레 탄 폼
라 텍 스	천연라텍스, 케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

제 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7-35호(2007. 1. 24)

개 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2007. 8. 2)

개 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79호(2009. 12. 30)

개 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34호(2010. 6. 23)

개 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0033호(2017. 2. 8)

개 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253호(2017. 7. 21)

개 정: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95호(2018. 6. 29)